

요 약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해당 법안은 보험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유·광고 금지, 금융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사기죄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규정 도입,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의무화,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

○ 2024년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총 16건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¹⁾의 내용을 반영하여 정무위원회 대안이 마련되었고(2023. 11. 30), 이후 두 차례에 걸친 법제사법위원회(2024. 1. 8 및 2014. 1. 24)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였음(2024. 1. 25)
- 이하에서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함

○ 이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유·광고 금지, 금융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사기죄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규정 도입,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의무화,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²⁾

- 개정안에서는 보험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금지함(제5조의2, 제8조 제1항 제2호)
 -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이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한 자는 보험사기죄와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함
 - 최근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사기행위의 알선 등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임
-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권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제5조의3, 제15조 제1항 제2호)
 -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행위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보험사기행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 가능한 자료의 종류 및

1) 윤창현 의원안(제2102553호), 김한정 의원안(제2106861호), 홍성국 의원안(제2106276호), 이주환 의원안(제2101190호), 윤관석 의원안(제2114398호), 박재호 의원안(제2117422호), 홍석준 의원안(제2116832호), 김병욱 의원안(제2115568호), 이종배 의원안(제2116023호), 강민국 의원안(제2118443호), 소병철 의원안(제2117766호), 박수영 의원안(제2121245호), 김희곤 의원안(제2120025호), 윤주경 의원안(제2120419호), 박수영 의원안(제2121280호), 박수영 의원안(제2121390호)

2) 보험업 관련 중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및 명단 공표, 보험사기 목적 강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 반환 의무 도입 등에 관한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됨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금융위원회는 또한 보험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 가능한 자료의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위 자료제공 및 제출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함
- 금융위원회는 제공 및 제출받은 자료를 제공·제출받은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됨
- 한편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유·광고 금지 조항에 위반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또한 개정안에서는 보험사기죄에 대한 형사처벌 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제8조 제2항)
 - 현행법상 보험사기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함
 - 현행법상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①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대상으로 하면서 이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제11조 제2항),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에 대한 조항이 없었는데, 해당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임
- 개정안은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에 대한 내용도 규정함(제7조 제3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와 관련하여, 심평원으로 하여금 입원적정성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 경우 수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
- 개정안에서는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도 신설함(제7조의2)
 -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행위로 자동차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기 피해사실 및 후속 처리절차 등을 고지해야 함
 -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할증보험료 환급 절차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보험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취지임